

제 474 호

1974. 12. 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차례

◎조례

제 900 호 :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조례증개정조례 ..... 3

◎규칙

제 1427호 : 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증 개정규칙 ..... 3

제 1428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증개정규칙 ..... 4

◎훈령

제 392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위임전결규정 ..... 16

◎고시

제 184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29

제 185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29

제 186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30

제 187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및 지적승인 ..... 32

◎공고

제 257 호 : 잠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공고 ..... 32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258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실시 공고	33
제 261 호 : 구획정리사업시행계획변경(기간연기)공람공고	35
제 263 호 : 적인개각공고(영등포구화곡제1동)	36
제 266 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치변경에 대한 공고	36
◎ 사 병	36
◎ 휘 보	
관악구 보건소 청사 이전	37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 설치조례를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4. 12. 17

◎ 서울특별시조례 제 900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조(수강료등) ①사업관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교도 수강료

가. 미용과: 월 1,000 원

나. 양재과: 월 1,000 원

다. 현물과: 기계 월 1,000 원

아후강월 1,000 원

라. 타자과: 월 1,000 원

마. 수예과: 월 1,000 원

2. 강당사용료 1회 1,000 원

3. 직업소개 및 상담무료

②수강료 및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된수강료 및 사용료는 일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6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강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당사용료를 면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 5조에서 규정한 수강료는 이 조례 공포이후에 입소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4. 12. 17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27호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5 조 2 ( 22 특별경비대 ) ① 22 특별  
경비대에 본부, 제 1 제대, 제 2 제대  
및 제 3 제대를 두고, 본부장은 경비  
대장이 전임하며 제대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② 본부 및 제대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부

- 가. 경호제회
- 나. 복무 및 인사
- 다. 경비 및 보급
- 라. 직인 관수
- 마. 장비 관리

## 2. 제대 ( 제 1, 2, 3 제대 동일 )

- 가. 경호경비
- 나. 지방각시도 지원근무
- 다. 기타 특수 경호경비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편의원 수가 조례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4.12.17

## 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 1428 호

서울특별시 편의원 수가 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편의원 수가 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 1 조증 제 1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 진료청구 ) ① 시 편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진찰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 진찰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 타시도거주자 ) 서울특별시  
주민이 아닌 타시도 거주자에 대하여  
여는 응급환자 및 행여환자를 제  
의하고는 무료 진료를 할 수  
없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 입원허가 및 보증금 ) ① 입  
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의 입원허가신청서, 별지 3 호  
서식의 입원서약서 및 별지 제 4 호

<p>서식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무료환자는 입원 허가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p> <p>② 무료환자는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한다.</p> <p>제4조 중 혼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4조(무료환자의 진료기간) 무료환자에 대한 진료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6조(감면) ①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가를 감면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면제 대상자(무료환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1종 전염병환자</li> <li>나. 행여환자</li> <li>다. 생활보호대상자</li> </ol> </li> </ol>	<p>라. 시에서 인가한 사회사업단체의 환자</p> <p>마. 마약사범</p> <p>바. 각종 전염병등에 근무하는 척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된 자</p> <p>사. 주요 행사에 참석하던 공상자</p> <p>아. 도시계획사업 집행으로 인한 피해용자족의 부상자</p> <p>자. 시에서 적영하는 작업 현장에 종사하던 공상자</p> <p>차. 파월장병전사자 유가족증명 또는 확인증소지자. 다만, 가족의 범위는 동일 호적내에 있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 및 제세로 한다.</p> <p>카. 구청장 및 출장소장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진료요구가 있는 요구호대상자(영세민)로서 시장이 배정한 인원의 범위내에서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p> <p>타. 기타 병원장이 특별히 사용가 있다 고 고지한 자</p> <p>2. 감액대상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요구호대상자(영세민) 증명 소지자로서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li> </ol> </p>
---	--

<p>동장의 진료요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가 전체금액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p> <p>나. 기타 병원장이 특별한 자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2) 면제대상자는 무료 병동에 감액대상자는 유료병동 3등실에 입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9조 제2항중 "사용료 및 수수료"를 "수가"로 한다.</p> <p>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0조(수술구분) 수술의 구분과 종목은 별표와 같다.</p> <p>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1조(고가약) 고가약이라 함은 아래 열거한 일반 견위소화제류,</p>	<p>와 일반의용기제류 이외의 약품을 말한다.</p> <p>1. 일반 견위소화제류 증조, 티아스타제, 전말, 기마구, 탄마, 스크포리아엑기스, 판토레아친 비스프스카오링, 탄말비 등</p> <p>2. 일반감기 조제약품류 아스피린, 페나세친, 카페인, 탄마, 향히스타민제, 아미노피린, 살피린 등</p> <p>3. 일반연고 거제 및 외용기제류 와세린, 아연화봉산, 유황등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실설한다.</p>
부 칙	
수술구분과 종목	
1. 일반외과	
수술구분	종 목
대수술	대소장절제술, 간영결제술, 위장수술, 탄낭 및 담도수술, 위절제술 미주신경절제술 및 그와 동반하는 수술 각종 악성종양제거술, 갑상선절제술, 유방암근치수술, 급성복막염수술, 기타 특수수술 등
중수술	농통, 간농양, 횡경막하농양 및 기타 심부농양비액술, 충수절제술, 위장관문합술, 장폐쇄교정술, 탈함 및 항문질환수술, 활장교정술, 식파술 등
소수술	소종양적출술, 소파술, 생식 등

## 2. 흥락외과

수술구분	종	목
대수술	개심술(심폐기사용) 체전체술술, 늑막외폐질제술, 체질제술, 박피술, 식도정형술, 심낭질제술, 종격증제거술, 대동맥성형술, 혈관이식수술등	
중수술	흉곽성형술, 배부분질제술, 말초혈관성형술, 동맥문합술, 승모판막질개술등	
소수술	개흉술, 흥락삽입술, 심장도자술, 늑골질제술등	

## 3. 신경외과

수술구분	종	목
대수술	개두술: 뇌중앙수술, 뇌간수술, 뇌혈관수술, 두개강내혈증 정신외파수술: 두개골 정형수술등 정외파수술: 파킹증식병, 블수의운동, 시청파괴술등 전주방절제술: 척수손상수술, 척수간액탈출질환 척수농양수술등 요추교감신경 등적출술: 선천적기형정형술, 삼차신경통수술등 두개颥공술: 전두엽질술, 부분척추방절제술, 척추수술, 말초신경수술등	
중수술	뇌실천자술: 두피혈관수술, 두개골중앙, 두개골수입 두개颥공술: 뇌정액간질영술등, 경상박뇌혈관질영술, 두동맥포출술 두피손상 또는 중앙 삼차신경천자술, 안면신경암수술등	

37-8 제474호

시

보 1974.12.17

## 4. 정형외과

수술구분	종 목
대수술	척추, 고관절, 경갑관절, 숨관절, 주관절, 대퇴 하퇴, 상박전박수족 등외, 골결 및 질판 골수 끌라염 사지절단(대퇴, 하퇴, 상박, 전박 수족)
중수술	골 결 등
소수술	사지(경미한것) 등

## 5. 산부인과

수술구분	종 목
대수술	자궁경부암수술, 질암수술, 외음부암수술, 자궁전체출술(자궁체부암 단상폐암등) 제왕절개겸 자궁전체출술, 복식 및 질식자궁전체출술, 이중자궁부속기적출술, 자궁부분청출술, 복식지궁위치교정술, 제왕절개술, 부속기절제(난소낭종)차궁외 임신수술 난관정형수술등
중수술	질식자궁위치교정술, 단순퇴음절제, 질벽정형술, 친구성음정형술, 경관정형술, 복식및질식단관절찰, 이상분만, 시력적개복등
소수술	(시험적개복) Bartholin선농양절개, 자궁경소작술, 폐쇄성처녀막절개술, 인공유산등
외래수술	소파수술, 전기소작술(자궁, 경부) 난관통기검사, 질확대경검사, 다구라스씨 낭원자술등

## 6. 비 노 가 과

수술구분	종	목
대 수술	신체출술, 신부분적출술, 부신수술, 노관장문합술, 노관외부이식술, 노관절석술, 방광처출술, 전립선처출술, 정낭수술, 음경암근치술, 고환암근치술, 신절석술, 신우전석술, 신우관성형술, 노관방광이식술, 노도성형술, 경노도전립선절제술, 신체출술, 노관장문합술, 노관절석술, 방광각종수술, 전립선처출술, 고간척출술, 정관부고환문합술, 음경절제술, 신절석술, 신류조돌술, 부분적방광절제술, 경노도각종수술, 노도성형술등	
중 수술	방광투조불술, 음낭수중수술, 무고관적출술, 정관절제술, 경노도적전기응고술등	
소 수술	정관절제술, 포경수술, 노도절석술, 전기응고술, 외노도구수술등	

## 7. 안 과

수술구분	종	목
대 수술	강탁수술, 각막이식술, 백내장수술	

## 8. 이비인후과

수술구분	종	목
대 수술	고막성형술, 비성형술, 편도선처출술, 비증적교정술등	
중 수술	편도절제술, 기관절제술, 경구후두수술, 비골절점복술, 내신경검사비준교정술, 식도및기관내이물질출술, 후두조직절제검사등	
소 수술	아미노이드절제술, 비이적출술, 내시경검사, 비안구강조직절제검사등	

37-10 제474호

사

보

1974.12.17

별지제 1호서식

## 진찰권(앞면)

과제호

성명	세	성별	남여
주소	서울시 구로가	번지 번호	동반
발급월일	서기 년 월 일		
서울특별시립병원장			

(뒷면)

## 주의사항

- 본권은 치료를 받을 때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 본권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본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입니다.

&lt;별지 제 2 호 서식&gt;

입 원 허 가 신 청 서본  
적

주 소

동 반 (전화 )

환자 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당 세) 성별 남 여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귀원에 입원코자 입원서 약서와 열대보증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자

(인)

서 울 특 별 시립 병 원 장 관 하

37-12 제 474 호

지

1974.12.17.

<별지 제 3 호서식>

입 원 서 약 서

1. 본인은 귀원의 모든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귀원의 수술, 검사, 기타 일체 치사에 순응하고 그로 인한  
여하한 결과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귀원의 치사에 따라 입·퇴원, 기일을 염수하겠습니다.
4. 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건은 일체 연대보증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5. 본인은 입원치료중 불해히 사망하였을 경우 병리해부와 기타 필요한  
검사 및 의료상 연구를 위한 조직 일부를 채취하여도 하등 이의가  
없음을 본인 보증인 양서하여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환자 본인 (인)

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보증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lt;별지 제 4 호 서식&gt;

## 재정보증서

본 적

주 소

환자성명

직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19 년 월 일 생

성별 남 여

상기 환자가 귀원에 입원함에 있어 수가의 낭비는 물론  
병원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지체 없이 연대 보증합니다.

19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통 반

성 명

(인) 직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 장

전 화

거주지

전 화

연대보증인

주 소

통 반

성 명

(인) 직업

생년월일

19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 장

전 화

거주지

전 화

서 울 특 별 시 팀 병 원 장 귀 하

37-14 제474호

시 보 1974.12.17

<별지 제5호 서식>

○○구(출장소)

문유기호

197

수 신 시립병원장

제 목 요구호 대상(영세민)환자 진료 의뢰(무료)

1. 당구 관내 다음 요구호대상(영세민)환자를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호 "카"목의 규정에 의거 귀병원에 의뢰하오니 무료 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자인적사항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첨부 요구호 대상자 증명 1부.

증명

○○구청장(출장소장)

제 474-호

사

보

1974.12.17 37-15

별지 제 6 호 서식

○ ○ 동

분류기호

197

수 신 시립병원장

제 목 요구호대상(영세민) 환자진료의뢰(감액대상자)

1. 당동 관내 다음 요구호대상(영세민) 환자를 서울특별시립  
병원수가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뢰하오니  
진료 조치하신고 수가를 감액(50%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자인적사항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세대주 외 관계

첨부 요구호대상자증명 1부 끝.

④ ⑤ 동 장

37-16 제474호

시

보

1974.12.17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위임전결 규정  
적용 다음과 같이 공포하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4.12.12

후령

⑥ 서울특별시 후령 제 392 호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위임전결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에 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시장 지하철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지하철본부의 각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 각과장 및 계장(현역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결하게 하여 책임과 권한에 의한 결재手續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을 기하고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적용 ) 시장, 부시장, 본부장 담당관, 과장 및 계장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 전결방법 ) ① 부시장, 본부장 담당관, 각과장 및 계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한 이 규정의 결재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하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된 결재구분에 의한 이미 결재된 사항으로서 이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 ( 협조 ) 전결사항중 다른과와 관련 있는 사항은 반드시 당해과의 협조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협조과와 공통되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 결재위반여부확인 ) 문서통제관은 별표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

제여부와 협조부서의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1. 각 과통사 항

계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결제권자부서					시협조처장
			제과 담당부서	본부	부서	장	장	
각	1. 복무	1. 출장명령						
과		(1) 담당관이상의 관외					<input checked="" type="radio"/>	관리과
통		(2) 담당관, 과장의 관내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checked="" type="radio"/>			
		(3) 과장의 관외			<input checked="" type="radio"/>			
		(4) 계장이하의 관내			<input checked="" type="radio"/>			
		(5) 계장이하의 관외			<input checked="" type="radio"/>			
		(6)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input checked="" type="radio"/>		
		2. 출장복역서 처리						
		(1) 담당관 이상			<input checked="" type="radio"/>			
		(2) 과장이하(현업 포함)			<input checked="" type="radio"/>			
		3. 휴가, 조퇴, 의출의 허가 및 특근명령						
		(1) 본부장의 휴가				<input checked="" type="radio"/>		
		(2) 담당관의 휴가			<input checked="" type="radio"/>			
		(3) 과장이하 직원의 휴가			<input checked="" type="radio"/>			
		(4) 과장의 조퇴, 의출, 특근명령				<input checked="" type="radio"/>		
		(5) 과직원현업소장의 조퇴, 의출, 특근명령			<input checked="" type="radio"/>			
		(6) 과직원의 일일 당직			<input checked="" type="radio"/>			
		(7) 현업기관장의 일일 당직			<input checked="" type="radio"/>			

37-18 제4743

시  
록

1974.12.17

계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경재권자			
			제과 과장	담당 관	본부 부장	부서 장
각 파 통	2. 기획	1. 기본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변경			○	
		2. 심사분석 자료 제출		○		○
		3.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 (부내왕복문서)		○		
		4. 기타 경미한 자료제출 (부내왕복문서)		○		
		5. 소관업무의 통계처리		○		
3. 예산	관리과 경리과	1. 예산편성 자료		○		
		2. 예산배정 요구		○		
		3. 공사집행, 물품 및 부동산매매 (1) 1 건당 1,500 만원 이상		○		
		(2) 1 건당 1,500 만원 미만		○		
		4. 물건매매, 노력의 공급 및 운반		○		
		5. 물건임대차		○		
		6. 재산 폐기 처분		○		
		7. 보상업무 (1) 보상업무 및 종합계획 및 1,500 만원이상의 보상금 지급		○		
		(2) 1,500 만원미만의 보상금 지급		○		
		(3) 100 만원이하의 보상금 지급		○		
		8. 세수수료지출		○		

제 별 구 분 과 목 제 별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명	결제권자				행 적 처		
		제 장 장	과 장	담 판 관	본 부 장	부 서 장	시 장	
각 파 공 통	9. 예산의 임대차 및 임대료 결정 10. 봉급, 임금, 여비, 공용요금, 제세 기타 범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 무적 경비의 징행증의 11. 수입인자 또는 수입증자의 소인 검열 12. 물품의 반납 13. 물품의 청구와 수리 14. 시의전화 사용허가 15. 소속금품 출납 명령 16. 설계범위 내의 인부고용 17.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18. 도급공사의 기성부분의 준공검사 19. 예산 제책정요구 20. 공사하자 보수명령 21. 공사용 차량 공차사용 및 풍대 승인 22. 사용료와 수수료의 조정 23. 도급공사의 중지해제결정 및 기공	○			○			

37-20 제474호 시보 1974.12.17

제 별 단 위 사 업	세부사업명	결재권자					협조처
		제 장	과 장	담 당 관	본 부 장	부 서 장	
작 과 공 동	24. 준공, 공사 기간 연기 결정 25. 설계변경 시행(감액, 증액) 26. 공사로 인한 공작물이전수속 및 소유 권 이전허가 27. 시공 감독원 지정 28. 소관사업소의 예산배정요구 29. 계약심사의뢰 30. 공사현장 보고서 31. 설계변경 이유서				○	○	
4 민원 서류	1. 중요청원진정서, 전의서 2. 경비하 청원진정서 및 전의서 3. 상부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4.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	○	○	
5 기타	1. 소속직원의 사무부장 2. 조례, 규칙, 훈령, 관리규정, 예규에 제정 개정요청 3. 사무 인계 인수 가. 본부장 사무인계 인수 나. 담당관 사무인계 인수 다. 과장사무인계 인수		○	○	○	○	관리과

2. 관 라 과		세 부 사 업 명	절 제 권 자					사업 조처
계별	단 위 사 업		제 과 장	과 당 별 본 부 관 장	부 서 장	부 서 장	부 서 장	
서 무 계		1. 청중 단속 및 청사내의 경비 2. 당직 근무명령 3. 상황실 관리 및 회의실 관리 4. 회의 운영 5. 보안 관리 6. 차량 관리 7. 광역의 관리 8. 문서 통제 및 분류	○ ○ ○ ○ ○ ○ ○ ○					
인 사 계	연금 사무	1. 공무원 연금 관계 확인, 연금 카드 송부 및 외회 2. 기여금 불입내역서 제출 3. 연금부 담금 불입	○ ○ ○					
복무		1. 4급 이하 공무원의 훈계 및 그 이하의 조치 2. 고용원, 임시직 공무원에 대한 면 직 강급 조치		○ ○				
교통 증명 발급		1. 소속 공무원 해외파견자 추천 2. 공무원증 기타 재증명 발행 및 인사기록서류 이송		○ ○				

37-22 제474호 시 보

1974.12.17

제별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명	결재권자					협조처
			제 작 장	파 당 관	본 부 장	부 서 장	시 장	
기 회 제	기회 예산	1. 기회업무의 종합조정 및 사업 우선 순위 결정					○	
		2.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제출			○			
		3. 예산 예입	○					
의 무	의무	1. 차관 및 기채에 관한 사항					○	
		2. 원리금 상환			○			
예 산	예산	1. 예산 배정	○					
		2. 예산 합의	○					

## 3. 경리과

제별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명	결재권자					협조처
			제 작 장	파 당 관	본 부 장	부 서 장	시 장	
경 리 제	경리	1. 재무과정에 관한 사항 협의	○					
		2. 전도자금 지출에 관한 합의	○					
조 달 제	조달	1. 확정 또는 미확정 채권의 양도 승인	○					
		2. 물품 출납 보관	○					
관 재 제	관재	3. 창고운영	○					
		4. 복제 및 피복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					
		5. 회전자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6. 회전자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974.12.17 37-23

4. 운수과			설계권자					
계별	단위 사업	세교사업명	제	과	당	본부	부서	협조처
			장	장	관	장	장	장
운 수 제	영업 사업	1. 구내 영업 허가 2. 광고 영업 허가 3. 현업종사원 수시 교양 4. 현업 종사원 교육훈련			O			
	운영	1. 단체여객승인 2. 임시연차 설정 3. 동차 증결		O		O		
심 사 제	승차권 심사	1. 여객운수 수입 및 환불심사 2. 물용 승차권의 폐기 3. 회수승차권의 심사 4. 실지 심사 5. 보고 장표류의 심사		O		O		
운 전 제		1. 타운수기관과의 업정동의 체결 2. 열차편성 계획 3. 타운수가관과의 운전규칙에 관한 조사			O	O	O	O

37-24 제474호 시 보 1974.12.17

## 5. 공무과

제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결재권자				별조처	
			제 장	과 장	당 관	본부 부장		
보 선 제	1. 제 회수 팀	1. 보선작업 계획 및 실적				○		
		2. 체도보수공사 시행방침 결정				○		
		3. 체도개량계획 방침 결정				○		
2. 공 사시 행		4. 보선기계운영 계획방침 결정	○			○		
		5. 자갈설 배조사 및 보충계획 (수송계획) 결정				○		
		6. 선로 및 철조물(건축물제의) 의 보수공사의 선제 및 조사 결정				○		
3. 기타	1. 공사용품의 준비 및 운영 2. 공사설계의 심사 및 준공공 조사 보고	1. 공사용품의 준비 및 운영	○					
		2. 공사설계의 심사 및 준공공 조사 보고	○					
		3. 선로차단공사 시행 및 결정				○		
		2. 운전사고 및 선로재해처리방침				○		
		3. 선로점사 및 점차				○		

제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결재권자					협조처
		제 장	과 장	담 당 관	본 부 처 장	부 서 장	
	4. 해도 재료 운영 사항 5. 선로 및 시설물의 도표류 관리 수정 사항 6. 해도 재료 해손 사항	○	○			○	
전 축 체 회 수 립	1. 계 2. 급수시설의 공사설계 심사 및 준공조사 보고 3. 공사 및 보수용품의 준비 및 운용 4. 건축물 및 급수설비의 보수 및 관리 계획	○	○	○	○		

37-26 제474호

서 보

1974.12.17

## 6. 건설과

제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결재권자					현조처
		제과 장	담당 관	본부 부장	부서 부장	시장	
제 위 기	1. 지하철 건설의 기본조사 및 계획 수립  2. 지하철건설 토목공사 시공계획 수립  3.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예산 운용					○	
설 계 제	1. 토목구조물의 기준공법 및 품질 재정과 조정  2. 건설공사 세부시행 계획수립				○	○	
운 영 기	1. 공사진도 및 품질관리의 종합 조정  2. 자재수급 계획수립 및 요구  3. 토목시험의뢰  4. 공사유지 관리 협의  5. 설계변경내 이전비 처리	○					
공사 1.2회	1. 건설토목공사 설계 변경  2. 소관공사 현장 자재 관리	○				○	

제 474 호 시 보 1974.12.17 37-27

7. 전 차 평			결 계 권 자				협조처
계별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명	제	과	담 당 부 관	본부 부 장	
전 차 제		1. 전차의 규격 제조 2. 전차부속품 수급 계획 3. 사업소 지도 감독 4. 각종 재원의 통제 기획			O	O	
검 수 제		1. 전차 검수에 관한 계획 및 각종 보고 2. 전차고장 보고 (경미사항) 3. 전차고장 보고 (중대 사항) 4. 전차 운영 실적 보고			O	O	

37-28 제474호 시 보 1974.12.17

8. 전기파		제별 단위 사업	세부사업명	결재권자					협조처
제 장	파 장			담당 관	본부 부장	부서 부장	시 장		
각 계 공 통			1. 제시설 기능유지 검사에 관한 사항 (1) 변송전 선로검사 (2) 고저압 배전선로 검사 (3) 급전선로 검사 (4) 강체선로 검사 (5) 전착선로검사 (6) 배전설 설비 검사 (7) 역전률 전기 설비 검사 2. 제시설의 신설에 관한 사항 3. 제시설의 개조 또는 수리에 관한 사항 4. 제시설 기능유지 점검에 관한 사항				○		

##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4 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 1971.4.7 )  
로 일부변경결정 고시된 서울특별  
시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  
법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  
국에서 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 1. 도면생략

2. 지적승인조서

( 도면표지와 같음 )

1974.12.11

서 울 특 별 시 장

##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 승인조서

단위 : 폐

구 분	위 치	면적	비 고
준공업지역	서대문구 성산동, 수색동, 삼암동 일부지역	3,492,000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5 호

##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 건설부고시 제 198 호 ( 71.4.7 )  
로 일부변경결정고시된 준공업지역  
( 영등포구 사홍동, 갈리봉동, 독산동 )

영동동, 문래동, 영등포동 ), 삼암지  
역 ( 영등포구 영등포동 2,3,4 가  
사홍동 일부지역 )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4.4 )의 규정에

37-30 제474호

시

보

1974.12.17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첨부 1.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 (도면표시와 같음)

2. 지적고시도면 (도면생략)

1974.12.13

서울특별시장

기.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용도지역구분	위 치	면적 (m <sup>2</sup> )	비고
준공업지역	영등포구 서홍동, 가리봉동, 독산동, 영등포동 양평동, 문래동 일부 지역	16,742,970	
상업지역	영등포구 영등포동 2,3,4가, 일부지역	140,266	
상업지역	영등포구 서홍동 일부지역	32,731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6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건설부고시 제198호 (1971.4.7.)로 일부면경 결정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전설부고시 제123호 (73.4.4.)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각 해당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다.

첨부 1. 도면생략

2. 지적승인조서 (도면표시와 같음)

1974.12.16

서울특별시장

##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구 분	위 치	면적 (㎢)	비 고
상업지역	관악구 신림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255번지 일대지역	241.338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	서대문구 불광동, 갈현동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일부지역	53.650	"
"	성동구 천호동 397번지 일대 구획정리사업지구 성내동 25번지 일대 일부지역	501.339	구획정리사 업지구내 일부
"	서대문구 역촌동, 응암동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지역	330.735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	동대문구 망우동, 망우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98.550	"
"	서대문구 대현동, 북아현동, 노고산동, 창천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225.385	"
준공업지역	도봉구 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530.804	"
"	성동구 성수동 1가, 2가 일부지역	1,970.500	"

\* 도내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각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37-32 제 47 호 시 보 1974. 12. 17.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7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  
4.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

가. 시설(학교) 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학교	도봉구 중계동 452 부근	11,000坪	중계국교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도봉구청에 보관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7 호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인가 공고

1.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전  
설부공고제 125 호(74.12.6)로  
사업 시행인가 되었기에 토지구획정  
리사업법 제 32 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한다.

시하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 시민봉  
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12. 16

서울특별시장

2. 본 공고는 서보 및 일간신문 2개  
사에 게재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겠으  
나, 개별통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간接한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 제 2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제 474 호 시 보 1974.12.17 37-33

<p>- 공 고 내 용 -</p> <p>가. 사업명: 서울특별시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p> <p>나. 시행지구: 성동구 잠실동, 신천동, 송파동, 전지역 삼성동, 삼전동, 석촌동, 기락동, 이동, 방이동, 풍납동, 둔 촌동, 성내동, 각일부지역 다. 시행면적: 3,395,000평. (세척면적 20,126평)</p> <p>라. 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4개년</p>	<p>(74.12.6-78.12.31)</p> <p>마. 지시사항: 생략</p> <p>1974.12.11</p> <p>서울특별시 장</p> <p>◎서울특별시 공고 제 258 호</p> <p>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실시 공고</p> <p>75년도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의 시행일자를 다음과 같이 시 행고지 공고한다.</p> <p>1974.12.12</p> <p>서울특별시 장</p>
--	--

## 1. 시험구분

면허종별	시험일자	장소
2종보통	1월 7일, 3월 13일, 5월 8일, 7월 10일, 9월 11일 11월 13일	자동차운전면 허시험장 (한남동)
1종대형	1월 6일, 3월 19일, 5월 21일, 7월 16일, 9월 17일, 11월 19일	"
1종특수	2월 6일, 4월 3일, 6월 5일, 8월 7일, 10월 2일, 12월 4일	"
1종보통	2월 11일, 4월 8일, 6월 10일, 8월 12일, 10월 14일, 12월 9일	"
1종특수	2월 19일, 4월 16일, 6월 18일, 8월 20일, 10월 16일, 12월 17일	"
원동기	매주 금요일	"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가. 출별시험실시일자 10일전부터  
시험일자전일 12:00까지 접수마감  
나. 접수마감일 및 시험일자가 풍휴일  
인 경우는 하루 앞당겨 실시한다.

## 3. 시험과목

가. 필기시험 : 교통관제법령 1과목 구  
조 및 취급방법 1과목  
나. 운전적성시험 : 신체검사 및 지각반  
응 검사  
다. 기능시험 : 코 - 스 장거리

## 4. 응시자격

가. 도로교통법 제57조(면허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로서  
1) 제1종대형면허는 만 25세이상  
의 자로서 운전경력 3년  
이상인자  
2)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응시자는 만 16세이상인자  
3) 기타 면허 응시자는 만 18세  
이상인자

나. 응시자의 주소지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서울  
특별시내 거주자에 한한다.

##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응시원서 뒷면  
신체검사서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병원(국립경찰병원)  
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주민등록표의 초본 1통(주민등  
록증을 제시하였을 경우는 예외  
로 함)※주민등록증지참시 대조확인  
다. 도로교통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시험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그에 따른 증  
명서 1통  
라. 사진 5매(최근 6개월내에 촬  
영한 상반신소명합판 3.5X4.5)  
마. 제1종대형면허시험응시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각시도지사발  
행의 3년이상 경력증명서 1통  
바. 수수료 600원(서울특별시수입증지)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200원

6. 원서배부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경찰국교통과면허제  
(용산구한남동소재)

7.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것은 서울특별시경  
찰국 면허 세(54-6719, 54-679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1 호

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변경  
(기간연기) 공람 공고

1. 전설부공고 제7호(72.2.19)  
및 제105호(69.10.1)에 의  
하여 사업시행인가한 홍남, 중곡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31조 및 제12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 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과 및 홍남, 중곡조합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한 통지는 따로 하지 아니하  
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74.12.13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연기할 면적	준공예정일	연기준 공일	비교
홍남	168,231 평	74. 12. 30	75. 12. 30	1년
중곡	949,340.30	"	"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3 호

직인개작공고

영동포구화목제1동자의 직인이 마  
멸되어 개작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974. 12. .

서울특별시장

1. 공인명: 화목제1동 직인

2. 서체규격: 한글전서체 2.1센치  
미터 정방형

3. 사용개시일: 75.1.1

4. 공인인명:

구 직인 신 직인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6 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치 변경에 대한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공  
고 한다.

다음은

총전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 의 187 호

변경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99 의 2 호

변경일자 : 74.12.12

1974.12.12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사령

◎ 1974.12.14

용산구 주사 이지순  
공원파(낙성대) 파견근무를

역함(74.12.14-75.6.15)

◎ 1974.12.18

주택건설과 지방건설기  
경영호

직위해제사유 변경으로  
인하여 직위해제사유를  
지방공무원법 제65 조의  
2 제 1 항제 3 호로 변경함.

◎ 1974.12.18

공업·파기·치방화공 정동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74.10.25 (발령 제

880호) 견적처분을 동일

자로 취소함.

도봉구 기사 김창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소

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

라 74.10.25 (발령 제

880호) 갑봉 1 월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 1974.12.20

순천농립 행정주사 임종선

서울특별시 전임을 역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1호봉을 급함.

마포구근무를 역함.

◎ 1974.12.20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김덕순

제 474 호

시      보

1974.12.17 32-37

1호봉을 굽함. 성동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④ 1974.12.20	지방전기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굽함. 미아리보조수원지 사무소 근무를 명함.
안병남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굽함.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김영태 지방전기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굽함. 불광동보조수원지 사무소 근무를 명함.

## 서      울      특      별      시      장

## 회      보

같이 이전하였기 알려드립니다.

관악구보건소 청사이전

1974. 12 .17

관악구보건소 청사를 다음과

관악구보건소장

## 다      음

보건소명	전      소      재      지	이      전      장      소	이전일자	변경된전화
관악구보건소	영등포구시흥동 118-90	관악구상도동 187-1	74.12.16	67 - 0601 67 - 0602 67 - 0603 67 - 0604